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55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 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 추가 등(이해민의원안)	3
가. 연구개발특구의 의의 및 지정 현황	4
나. 검토의견	7

I. 개요

1.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5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26.
- (3) 회 부 일 : 2025. 11.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 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 추가 등(이해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2) ○ 감면대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다음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감면율: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u>지정일 또는 등록일</u>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u>2028. 12. 31.</u> * 발의 당시 2025. 12. 31.	□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다음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u>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기업</u> ○ 감면율: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u>지정일, 등록일 또는 확인일</u>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

* 이해민의원안 2025. 11. 26. 발의(의안번호 14556)

가. 연구개발특구의 의의 및 지정 현황

□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¹⁾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5개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4개 거점별 강소특구를 의미함.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2011년 광주특구·대구특구, 2012년 부산특구, 2015년 전북특구로 확대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강소특구²⁾로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2025년 현재 총 14개에 달함.

2022년말 기준 연구기관 149개, 비연구기관 151개, 기업 10,348개 등 총 10,648개 기관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었는데, 2023년말 기준 연구기관 199개, 비연구기관 202개, 기업 14,594개 등 총 14,995개 기관으로 입주기관 수가 전년대비 약 41% 증가하였음.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2) 지정현황: 경기(안산), 경남(김해, 진주, 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경북(구미), 서울(홍릉), 울산(울주), 전남(나주), 전북(군산), 충남(천안·아산), 인천, 강원(춘천)

[연구개발특구 입주 현황]

(단위: 개)

구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강소특구	합계
연구기관	49	26	18	29	24	53	199
非연구기관	62	40	19	22	21	38	202
기업	2,803	2,641	1,053	3,376	799	3,922	14,594
합계	2,914	2,707	1,090	3,427	844	4,013	14,995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 지정 현황]

2019년 지정						2020년 지정						2022년 지정	
경기	경남	경남	경남	경북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울산	서울	충남	인천	강원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천안	서구	춘천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정부지원 및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등록한 첨단기술기업³⁾ 및 연구소기업⁴⁾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연도 개시 기준 3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후 2년 동안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음.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의 합계인데, 청년 상시근로자⁵⁾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

3) 특구 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4)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하여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5)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임.

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당 감면한도 2,000만원이 적용됨.

[연구개발특구 지정혜택 및 제한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발지원	① 실시계획 승인으로 30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② 특구개발사업(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 ③ 특구개발사업 추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부 심의 필요)
개발관련 규제완화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및 층수 완화 ② GB해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완화(15% 이내)
부담금 감면	① 개발사업시행자에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②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건축행위 규제	① 특구 토지용도 구역별 지정된 건축물이외의 건축 제한 ②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연면적 5천㎡ 또는 16층 이상)
입주계약 (업종제한 등)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입주 시 계약 필요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부지 양도가격 제한 ③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 제한(특구관리계획 별지4)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① 특구법 제9조 등에 따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설립
각종 지원사업 우대	①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중기부), 신진여성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과기부) 등 ② 각종 특구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세제 혜택	① (국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단, 지방세 혜택은 특구가 소재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특례 대상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⁶⁾에 따라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국가안보 강화,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인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보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국가전략기술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국가안보 및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감면한도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구 입주기업

6)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고용유인이 증가되어 지역특구 지역의 청년 등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청년고용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청년고용이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2005년 말 기준 23,558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28,630명으로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2025년 3분기 지역별 청년고용률 현황]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9.8	44.1	39.4	44.4	37.6	46.3	43.2	33.4	46.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4.5	48.2	46.1	38.9	43.7	45.7	39.0	43.6	45.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각각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R&D 세액공제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특례 대상에 자신이 보유·관리·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기업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공 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둘째,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연구개발 기업의 감면기간 개시 간주 기준이 기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비 불리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특례 대상에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은 기업을 추가하면서, 감면대상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기간 개시 간주일을 국가 전략기술을 확인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감면기간 개시일이 각각 첨단기술기업 지정일 및 연구소기업 등록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확인일을 감면기간 개시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됨.

다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⁷⁾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고자 하거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을 특구 안에 설립해야 하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요건과 연구개발특구 입주여부는 무관함.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 ④ ~ ⑧ (생략)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이전에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을 받은 날짜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이후 감면기간이 조기에 개시될 우려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미 달성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54